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 결

사 건 2024고정24 재물손괴
피 고 인 A
검 사 정민섭(기소), 김동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동호(국선)
판 결 선 고 2024. 6. 1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B 지상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C' 회장인 D과 사이에 위 토지의 소유권에 관해 분쟁을 겪어 왔으며, 피해자 E는 D로부터 위 토지를 임차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1. 10.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옮겨 놓은 컨테이너를 발견하고 지게차를 이용하여 위 컨테이너를 도로 건너편으로 옮겨 그곳 자두밭 아래로 떨어트려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컨테이너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열경화성수지 천정판 6박스, 문짝 1개, 열풍기 1대, 발전기 1대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지게차로 이 사건 컨테이너를 옮기는 작업을 하였던 F의 진술, 피고인과 F 사이의 통화 녹취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F에게 '컨테이너가 부서져도 괜찮으니 과수원 쪽에 있는 조그만 도랑이 있는 곳으로 밀어 넣어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토지와 관련하여 현재 피고인과 분쟁관계에 있는 D이 일부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컨테이너를 피고인의 주거지 대문 앞에 두도록 한 것이고, 피고인은 대문을 통한 출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 사건 컨테이너를 옮길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책임무능력이나 강요된 행위 등 위법성조각사유와 책임조각사유 등 범죄성립을 조각하는 사유를 주장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실이 다투어지는 경우 검사가 위법성조각사유와 책임조각사유의 부존재에 대하여 증명하여야 하고, 이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관하여 D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당일 위 토지에 자재를 갖다 놓으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D에게 연락하였더니 D이 대문 앞에



이 사건 컨테이너를 두어도 된다고 하여 그렇게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컨테이너를 피고인의 주거지 대문 앞에 옮겨 놓을 당시 D도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컨테이너는 D의 의사에 따라 의도적으로 피고인의 주거지 대문 앞에 옮겨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가 옮겨 놓은 이 사건 컨테이너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주거지 대문을 통한 출입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초래된 점, ③ 피고인으로서의 자신의 주거지로의 출입을 신속히 확보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하여 이 사건 컨테이너를 옮기는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F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컨테이너를 옮기는 과정에서 이 사건 컨테이너 바닥 부분 등이 파손되기는 하였으나, F의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컨테이너의 구조 및 이 사건 컨테이너와 대문 사이의 거리 때문에 이 사건 컨테이너를 지게차로 들어 올릴 경우 파손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F에게 이 사건 컨테이너를 건너편 과수원 쪽 작은 도랑으로 밀어 넣으라고 지시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컨테이너가 과수원 쪽으로 떨어지면서 파손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이 사건 컨테이너를 옮기기 위하여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이미 파손이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피고인의 주거지 대문 앞은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공로일 뿐만 아니라 이웃에는 타인의 주거지나 농경지가 있는 등 이 사건 컨테이너를 안전하게 이동시켜 둘 마땅한 다른 장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2조 제1항의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로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모아보더라도 위와 같은 위법성조각사유의 부존재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충분한 증거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기범 _____